

2025년 「경기 기후보험」 안내

경기도에서는 142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「경기 기후보험」을 운영합니다.

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,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(기후 취약계층)는 입원비, 교통비, 긴급이후송, 정신적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경기 기후보험 운영 개요

- 가입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(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가입절차 :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*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음
- 보험기간 : 2025.4.11. ~ 2026.4.10. (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: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)
- 청구방법 : 피해도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(한화손해보험)에 직접 청구
- 문의처 : 보험사 콜센터(02-2175-5030),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(031-8008-4242)

2. 보장항목 및 청구서류

구분	보장항목	보장내용	보장금액	청구서류
경기도민	온열질환 진단비 (T67)	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(연1회 제한)	10만원	<공통서류> 1.보험금청구서 2.개인정보처리동의서 3.주민등록초본/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4.통장사본 5.가족관계증명서 (미성년자의 경우) <온열,한랭질환,감염병> ○공통서류+진단서 (또는 소견서) <기후재해 사고위로금> ○공통서류+초진기록지+진단서(또는 소견서) ※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
	한랭질환 진단비 (T33,T34,T35,T68,T69)	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(연1회 제한)	10만원	
	특정 감염병 진단비 (뎅기열,웨스트나일열,쯔쯔가무시,라임병,말라리아,일본뇌염,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,비브리오패혈증)	감염병 진단 시 보장 (사고당)	10만원	
	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(기상특보,자연재해 관련)	기후특보(폭염,폭우,폭설 등)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 (사고당)	30만원	
기후취약계층	온열질환 입원(일당) (T67)	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(5일 한도)	10만원	<온열,한랭질환 입원비> ○공통서류+진단서(또는 소견서)+입원확인서+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<의료기관 교통비> ○공통서류+진료확인서+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<긴급이후송 지원> ○공통서류+진료확인서+구급차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+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<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> ○공통서류+초진기록지+심리상담센터 영수증+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
	한랭질환 입원(일당) (T33,T34,T35,T68,T69)	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(5일 한도)	10만원	
	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(기상특보, 자연재해 관련)	기후특보(폭염,폭우,폭설 등)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 (사고당) ※ 경기도민(4주이상 진단) 항목과 중복되지 않음	30만원	
	의료기관 교통비 (기상특보 시)	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 (10회 한도)	2만원	
	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(기상특보, 자연재해 관련)	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(사고당)	50만원	
	기후재해 정신적피해 (트라우마) 지원금	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 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 (5회 한도)	10만원	